

산 립 청

시 정 요 구

제 목 산지복구비 산정 부적정 및 예치 미조치

기 관 명 기장군

내 용

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는 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(이하 “복구비”라 한다)을 예치하게 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과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·고시한 단위면적 당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(산지전용·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: 1만제곱미터)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」 별표 1에 의한 “공사감리”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.

또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·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·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,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‘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중지’를 명할 수 있다.

기장군은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 대표이사 ○○○으로부터 아래

【표 1】 ‘산림복구비 부과 요청(2016. 12. 7., ○○○ 제16-95호)’이 있어, 2016. 12. 13. ‘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산지전용 관련 검토보고서’를 작성하면서 복구비를 1,561,037천원으로 산정(11.6146×134,403천원/ha¹⁴⁷)하여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 대표이사 ○○○에게 복구비 1,561,037천원을 인허가보증보험증권(피보험자는 기장군수로 하고 보험기간은 승인기간에서 12개월을 가산함)으로 통보일 이후 10일내 예치하도록 하였으나,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산지복구비 1,561,037천원이 미예치 되었다.

【표 1】 산림복구비 부과 요청 현황

사 업 명	위 치	사업면적	산지전용면적
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조성사업	부산광역시 ○○군 ○○읍 ○○리 산00-0번지 일월	202,767㎡	116,146㎡

그러나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 대표이사 ○○○의 산지전용협의지 면적 116,146㎡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복구비 산정 금액(1,561,037천원)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‘공사감리 요율(20억원 이하 1.53%)’을 곱한 금액(23,883천원)을 추가하여 【표 2】 ‘산지복구비 산정 명세’처럼 총 1,584,920천원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47) 2016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(산림청 고시 제2016-43호, 2016.5.2., 제정)에 다른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단가(134,403천원/ha) 적용

【표 2】 산지복구비 산정 명세

허 가 현 황			복구비 현황		정당복구비(천원)			미예치 액 (천원)
기 간	면 적 (㎡)	수허가자	산정금액 (천원)	예치일	계	복구비	감리비	
2014.6.25. ~ 2018.12.31.	116,146	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 ○○(주) 대표이사 ○○○	1,561,037	미예치	1,584,920	1,561,037	23,883	1,584,920

조치할 사항 기장군수는

[시정] 산지복구비를 재산정하여 미예치된 1,584,920천원을 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과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하도록 하시고,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